

제 2349호
2015. 02. 25.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장 운 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조	례	
제1246호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1247호	: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6
제1248호	: 서울특별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12
제1249호	: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16
제1250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 규	칙	
제647호	: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23
● 고	시	
제2015-11호	: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28
● 공	고	
제2015-132호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공고	31
제2015-138호	: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32
제2015-142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제6-2-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40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조	례
---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46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과 제3항을 같은 조 제3항과 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⑤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구민에 경우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2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별표2]2 개별기준 가.이용료 표 내 목욕장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생략) <신 설> ②(생략) ③ (생략) <신 설>	제12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현행 제2항과 같음) ④(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구민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별표2>

현행					
2. 개별기준 (※ 표기된 금액은 상한선임)					
가. 이용료 (단위 : 원)					
종목	구분	금액(상한액)			비고
		성인	청소년	어린이	
목욕장	1회 이용	5,000			

개정안					
2. 개별기준 (※ 표기된 금액은 상한선임)					
가. 이용료 (단위 : 원)					
종목	구분	금액(상한액)			비고
		성인	청소년	어린이	
삭제	삭제	삭제			

개정이유 및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65세 이상 노인 및 중구민에 한해 사용료 감면의 혜택을 주고자 함
- [별표2]2 개별기준 가.이용료 표내에 있는 목욕장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2조제2항과 제3항을 같은 조 제3항과 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⑤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구민에 경우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2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별표2]2 개별기준 가.이용료 표 내 목욕장 삭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47호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 안전사고”란 성폭력·학대·악취·유인·유해식품·화재·교통·수난·추락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어린이 안전관리”란 제3호의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신체·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나.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 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라.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2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어린이 통학차량”이란 제2조제5호, 제6호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3. 어린이 안전증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의 과정에 어린이를 포함한 구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 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고려하여 의견 차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제2조 제5호의 시설의 장은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시설물의 소방 등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안전 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제2조 제5호의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교육은 어린이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운영되도록 한다.

1. 성폭력
 2. 아동학대 예방
 3.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4. 약물의 오·남용 예방
 5. 재난대비 안전
 6. 교통안전
 7.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8조(사업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이나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관련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교육지원청, 아동복지시설, 경찰서,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안전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행의 자문 및 효율적인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의 원인으로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그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 제1항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어린이 등·하교 지도)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 등·하교시 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교시간에 교통지도를 포함한 등·하교 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어린이통학차량의 기준) ①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광각설외후사경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차량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어린이통학차량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차량이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차량이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차량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차량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을 앞지르지 못한다.

제14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① 구청장은 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어린이통학차량을 탈 때에는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가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에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성년인 사람이 동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어린이통학차량 등을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자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어린이통학차량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사회 전반에 팽배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소 중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꿈을 키워나가며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구와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등 체계적으로 관리·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제정목적 및 책임의 명확성 규정
 -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의견수렴(안 제4조 ~ 제5조)
 - 안전모니터링제 운영 및 어린이 안전교육(안 제6조 ~ 제7조)
- 사업의 보조 및 교류협력, 어린이 보호, 교통지도 등
 - 사업의 보조 및 정보의 교류, 협력 등(안 제8조 ~ 제9조)
 - 어린이보호 및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안 제10조 ~ 제11조)
- 어린이통학차량 기준 및 보호, 운전자 등의 의무
 - 어린이통학차량의 기준 및 특별보호, 안전지대 확보(안 제12조 ~ 제14조)
 -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의 의무(안 제15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48호

서울특별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 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거주·퇴소장애인 지원) ① 구청장은 거주시설에서 거주중이거나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 대상자는 서울시 복지재단 개별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2조(정의)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6.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 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생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현행과 같음)
제4조(계획의 수립) (생략)	제4조(계획의 수립) (현행과 같음)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 (생략)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생략)	제6조(지원) (현행과 같음)
<신설>	제6조의2(거주·퇴소장애인 지원) ① 구청장은 거주시설에서 거주중이거나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 대상자는 서울시 복지재단 개별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 ~ 제18조 (생략)	제7조 ~ 제18조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자립 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운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제6호)
- 거주퇴소장애인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6조의2)
 - 거주시설에서 거주중이거나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
 -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자는 서울시 복지재단 개별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49호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및「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제8항에 따른 음식점을 말한다.
2. “위생등급”이라 함은「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한 후 부여된 등급을 말한다.
3. “건강음식점”이라 함은 음식의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영업장내 금연 등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음식점을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인증 받은 건강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영업자의 의무) 건강음식점의 영업자는 음식문화 개선을 실천하며,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저염 음식을 조리 제공해야 한다.

제6조(건강음식점 인증) ① 구청장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위생등급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건강음식점으로 인증 할 수 있다.

② 건강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건강음식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인증 받은 건강음식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증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식품위생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국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구청장은 구민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3조)
- 구청장은 위생등급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건강음식점으로 인증 할 수 있음 (제6조)
- 구청장은 건강음식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증표지판 등을 지원 가능 (제7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위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50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월 270만원”을 “월 2,695,000원”으로 하고,

제4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제5조 제3항 중 “국내여비는”을 “국내여비(관외출장여비, 관내출장여비)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지급한 2015년 1월분 월정수당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 ~ 제2조 (생략)	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월정수당은 <u>월 270만원</u> 으로 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 <u>월 2,695,000원</u>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 (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단서신설)	제4조 (여비지급) ① ----- ----- ----- <u>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u>
제5조(여비의 종류) ① ~ ② (생략)	제5조(여비의 종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내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선박·항공·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u>	③ ----- <u>국내여비(관외출장여비, 관내출장여비)는</u> ----- -----.
제6조 (생략)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 (생략)	제7조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사항 통보에 의하여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변경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의원 관내 출장여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월정수당 “월 270만원”을 “월 2,695,000원”으로 변경 함 (제3조제1항)
-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라는 여비지급 단서규정 신설 (제4조제1항)
- “국내여비” 를 “국내여비(관외출장여비, 관내출장여비)” 로 변경 함 (제5조제3항)

규	칙
---	---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647호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구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소속의 팀장이하 업무담당자(이하 “팀장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

제3조 제1항 단서 괄호 중

“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를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팀장이하 업무담당자의”로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중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를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팀장이하 업무담당자는 “별표”에 준한 인계할 사항을 “별지서식”에 준한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결재 등 방식을 달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를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하며 팀장이하 업무담당자는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보관 등 방법을 달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직원”을 “팀장이하 업무담당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1조(목적) (생략)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신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근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범위)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구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소속의 팀장이하 업무담당자(이하 “팀장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 ----- ----- ----- -----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팀장이하 업무담당자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 하여야 한다. <u>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u>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 ----- ----- ----- ----- 생략할 수 있으며 팀장이하 업무담당자는 “별표”에 준한 인계할 사항을 “별지서식”에 준한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결재 등 방식을 달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과장이상은 4부를 작성하고 1부를 민원여권과에 인계 보존 관리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① ----- -----보관하여야 하며 팀장이하 업무담당자는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보관 등 방법을 달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
제6조 삭제	제6조 삭제 (현행과 같음)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생략)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현행과 같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생략)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현행과 같음)
제9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생략)	제9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할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생략)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할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현행과 같음)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 ① (생략) ② 직원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팀장이하 업무담당자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팀장이하 업무담당자까지 사무인계인수 대상에 명시함으로써 담당자 변경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인계인수를 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무인계인수 대상자를 팀장이하 업무담당자까지 확대(제2조 제1항 제3호 신설)

기존	변경안
팀장이하 업무담당자 규정 없음	팀장이하 업무담당자 명문화

- 팀장이하 업무담당자를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사무인계인수 도모

- 팀장이하 업무담당자의 사무인계인수 내용, 방식, 보존 및 관리 등 추가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1조 개정)

기존	변경안
“별표”의 사항 인계인수	“별표”에 준한 사항 인계인수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 작성	“별지서식”에 준한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 작성
‘날인’에 의한 종이문서를 통한 인계인수 및 보관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결재’에 의한 전자적 인계인수 및 보관

- 팀장이하 업무담당자의 사무인계인수의 신속성, 효율성, 탄력성을 확보
- 기존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과는 달리 사무인계인수의 내용, 방식, 보존, 관리 등 관련 내용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인계인수 할 수 있도록 규정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11호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41호(2006.4.20)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7-53호(2007.6.28), 제2009-10호(2009.3.1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3호(2012.5.10)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되어,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0-7호(2010.1.29.)로 사업 시행인가, 제2014-35호(2014.5.7)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우리구 저동2가 82-2번지 일대 저동 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관리 처분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74)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82-2번지 일원

다. 정비구역의 면적 : 2,041.5㎡ (대지 1,541.5㎡, 정비기반시설 500.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유디앤아이 대표이사 이영숙

- 주된사무소의 주소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리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A동 15층

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5년 2월 23일

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	높이 (m)	용도
1,541.5	924.64	21,686.93	59.98	1,171.80	지상26/지하3	99.0	숙박시설, 판매시설

2)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가) 분양대상자 및 분양면적

분양대상자		분양예정의 대지 및 건물			비고
성명	주소	토지(㎡)	건물(㎡)	용도	
(주)유디앤아이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 나인비즈니스센터 A동 15층	16.78	236.05	판매시설	

나) 보류지 시설

- 토지 5.90㎡, 건물 82.99㎡ (판매시설)

다) 체비지 시설

- 토지 1,518.82㎡, 건물 21,367.89㎡ (숙박시설, 판매시설)

3)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가)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 (행정청에 무상귀속)

연번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공부상 지적	편 입	성 명	주 소	
1	을지로2가 127-12	대	1.40	1.00	(주)유디앤아이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 나인비즈니스센터 A동 15층	도로
2	저동2가 77-10	대	94.30	34.15	이규곤, 박숙자	미합중국뉴욕주3플러싱시 열머스트76가44-20, 서울시종로구충신동189-7	공원
3	저동2가 79-3	대	0.30	0.30	오창윤	서울시성북구보문로29가길50,비01호	도로
4	저동2가 79-5	대	23.80	15.74			도로
5	저동2가 79-10	대	69.40	20.70	강남식, 권삼	서울시 성동구 중곡동 84-1, 미합중국메릴랜드주콜롬비아시캠벌미치가 10038	도로
6	저동2가 80-5	대	26.40	5.00			도로
7	저동2가 79-11	대	23.10	13.90	(주)유디앤아이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 나인비즈니스센터 A동 15층	도로
8	저동2가 80-1	대	43.00	23.00	최병석	서울시서초구방배로26길41, 103동701호 (방배동,방배동롯데캐슬로제)	도로
9	저동2가 82-2	대	251.20	65.97	신언두	서울시강남구학동로18길40, 501호(논현동)	공원
10	저동2가 83-6	대	167.30	167.30	김승학	서울시중구저동2가83-6	공원
11	저동2가 83-7	대	54.50	54.50	유해경	경기도성남시분당구곡동141청솔마을81 2-101	공원
12	저동2가 83-8	대	38.70	38.70	한정희	서울시양천구목동로19길30 (신정동)	공원
13	을지로2가 127-7	대	7.30	3.50	최병석	서울시서초구방배로26길41, 103동701호 (방배동,방배동롯데캐슬로제)	도로
14	을지로2가 127-8	대	55.20	15.20	재경부		도로
15	저동2가 79-23	대	85.00	5.70	건교부		도로
16	저동2가 77-17	도	10.30	5.30	건교부		공원
17	저동2가 83-9	도	238.00	16.84	중구청		도로
				13.20			공원
계(17필지)			1,189.20	500.00			

나)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연 번	저촉 국공유토지					무상양여 국 · 공유지		비고
	소재지	지목	면 적(㎡)			무상양도(㎡)	소유자	
			1필지 공부상	구역편입	용도폐지면적			
1	을지로2가 137-9	도	48.60	48.60	48.60	-	중구청	
2	저동2가 83-9	도	238.00	106.20	106.20	-		
3	을지로2가 132-3	도	22.40	22.40	22.40	-	재무부	
4	저동2가 77-17	도	10.30	10.30	10.30	-	건설교통부	
5	저동2가 79-18	도	1.60	1.60	1.60	-		
6	저동2가 79-25	도	2.30	2.30	2.30	-		
7	저동2가 79-31	도	0.90	0.90	0.90	-		
계	총 7필지		324.10	192.30	192.30	-		

사. 기존건축물의 철거(완료) 예정시기 :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1개월내

아. 관계서류 : 생략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비치서류와 같음)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132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등록번호	등록분야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비고
제13호	수질	한화에스앤씨 주식회사	김용욱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장교동, 한화빌딩)	신규

가. 공고기간 : 2015. 2. 25 ~ 2015. 3. 24까지

나. 공고방법 : 우리구 홈페이지에 전자 공시 및 구보게재. 끝.

2015. 2. 25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138호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공통 운영기준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우리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안 제2조)
- 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8조)
- 다.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진단(안 제10조~제12조)
- 라.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안 제13조~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 : 02)3396-4914, FAX : 02)3396-8657, E-mail : seoulman20@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기획예산과
(☎02-3396-49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2장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6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3장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8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구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구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9조(심의위원회 개최)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출자·출연 기관의 평가

제10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서울특별시·구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경영실적 평가진단) 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142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제6-3-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89호(2014.11.13.)로 세운 6-3-1구역과 6-3-2구역 통합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제6-3-1,2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예정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를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재생과, ☎02-3396-5762)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람요지

- 가. 사업의 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제6-3-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나. 시 행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261-4번지 일대
- 다. 시 행 면 적 : 14,845.02㎡ (대지 : 10,180.11㎡, 정비기반시설 : 4,664.91㎡)
- 라. 사업시행자
 - 성명 : 더유니스타(주) 대표이사 박래영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52
- 마. 시 행 기 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4개월
- 바. 건축계획 : 지하8층/지상20층, 연면적 144,682.14㎡, 업무시설 외 1

2. 공람기간 : 2015.02.25. ~ 2015.03.11.

3.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62)

4. 관계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